교원명예퇴직규정

개정: 2023. 4. 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제45조의3(명예퇴직)에 의거하여 교원명예퇴직(이하 "명예퇴직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 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,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② 전항의 근속년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재직기간 계산에 따라 산정하되, 본교 전임교원 임용 후의 재직기간만을 인정한다.

제4조(명예퇴직의 제한) ① 매학기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제한한다.

- 1.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자
- 2.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
- 3. 직위해제 중인 자
- 4.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또는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
- 5.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매학기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 근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명예퇴직을 제한한다.
- ③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자격 또는 허가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)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의 3개월 전인 11월말 또는 5월말까지 소속 학과 장 및 대학(원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[별지]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명예퇴직 예정일은 매학기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심의)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 등 교원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제7조(명예퇴직자의 선정 등) ①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.

-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.
- 1.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
- 2. 잔여근무년수
- 3. 근속년수
- 4. 신청인 소속학부(과)의 교원현황
- 5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③ 명예퇴직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④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- ⑤ 총장이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으나 명예퇴직일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 결정을 취소한다.
- ⑥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예퇴직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명예퇴직 신청의 철회) 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제7조 제4항의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.

-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철회사유를 서면으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무처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항에 따라 철회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명예퇴직수당 지급) ①명예퇴직자에게는 [별표]에 의거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정년예정일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5년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을 [별표]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명예퇴직 후 명예교수 추대) 명예퇴직자가 명예교수 선정일 기준 비전임교원에관한규정 제4조의 명예교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11조(순직 교원에 대한 특례)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규모는 [별표]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당 총액 범위 내에서 제7조 제2항 각호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2조(보칙) ① 명예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명예퇴직 대상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사직원으로 간주한다.

②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